

##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분석

A Study on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the Retirement of Pastor

오근혜<sup>1)</sup> · 황인태<sup>2)</sup>

### I. 서 론

노후에 경제적인 대책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의 노후생활은 경제생활 수준의 저하와 사회활동의 기회단절 등으로 인해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나, 대다수의 교회는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다. 예장합동은 11,538개 교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12개 교회가, 예장통합은 8,305개 교회 가운데 35%에 달하는 2,919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5,719개 교회 가운데 49%인 2,825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700여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40여 교회가 미자립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자립 교회는 각 교단별로 적게는 30~40%, 많게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 미자립 교회 기준이 다르며, 알려지지 않은 미자립 교회가 많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CTS기독교TV, 교단별 미자립교회 정책종합 2016.3.10).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는 전체 50,000여 교회 가운데 80% 가까이가 미자립 교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와 교인의 급감 등으로 인해 교회정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의 재정적 자립을 더욱더 어렵게 하면서, 목회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매우 많다.

교단마다 은급제도와 같은 교단차원의 목회자의 노후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소속 교단에 따라 운영내용이 다르고 은급제도와 같은 보장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교단도 존재하며, 시골·도시교회, 소형·대형교회 목회자간에도 노후생활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의 연금(은급) 미가입 은퇴목회자 노후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이 68.4%로 노후준비를 했다는 31.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이 어떤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생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응답자의 월

1) 제1저자, 협성대학교 금융세무학과 겸임교수, geunhye5@hanmail.net

2) 교신저자, 협성대학교 금융세무학과 교수, ithwang@uhs.ac.kr

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가 5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57차 총회보고서에서도 은퇴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예장통합 목회자가 43.1%, 예장합동 목회자가 36%, 기장 목회자는 61.8%, 감리회 목회자는 46.5%, 예장고신 목회자는 27%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은퇴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위한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의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은퇴를 위한 노후준비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단별 은급제도 및 국민연금 등 목회자의 경제적 소득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 2.1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

경제적 대책없이 은퇴를 한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은 경제생활 수준의 저하와 사회활동의 기회단절,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맞게 된다.

은퇴 이후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은퇴생활을 지내게 되는데, 이 시기를 위한 건강관리, 여가생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Turner(1968)은 은퇴 노인들은 ① 좀 더 나은 상태의 휴식과 만족스런 여가 시간 확보, ②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인정, ③ 은퇴 이전의 기득권 유지, ④ 안전과 보호, ⑤ 자기 표현과 성취의 기회보장, ⑥ 적절한 생활환경조건과 가족관계의 정서적 만족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2)가 개발한 은퇴지수에는 은퇴준비 영역을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준비에 필요한 요소를 정리하면 크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6% 정도가 재무적 은퇴준비를 잘 못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는 경우는 7%에 불과하며, 이러한 은퇴준비 부족은 전 연령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보험연구원, 2012). 국내 가계 전체에서 충분한 노후자금을 보유한 집단의 비중은 약 40~60%에 지나지 않아 재정적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재정적 은퇴준비 상황은 미비한 실정이다(문숙재·여윤경, 2001; 여윤경·김진호, 2006; 주소현, 2008). 통계청(2018)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1%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일하는 즐거움(33.9%)보다는 생활비 보탬에 응답한 비율이 59.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비를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복음전도에만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작 자신의 은퇴 후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노후보장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2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성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은퇴목회자가 대상인 연구 대부분에서 은퇴를 위한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강명환(2011)의 목회자의 은퇴인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예상백석의 은급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해 69.2%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6.2%가 필요하다고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은급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백석에서는 목회자들의 비협조와 재정상 어려움을 내세워 목회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서 은급제도 운영을 미루고 있다고 하였다.

김병옥(2005)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의 연간결산액은 2천만원 미만 18%, 3천만원 미만 10.8%, 5천만원 미만 21.2%, 7천만원 미만 10.0%, 1억원 미만 11.2%, 2억원 미만 14.4%, 2억원 이상이 14.0%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목회자 대다수가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화(2010)는 목회자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회자와 교단에서 국민연금을 노후준비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가입을 고려하여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예외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미가입 상태였는데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공단이나 교단차원에서 목회자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병용(2009)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소형교회 목회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형교회 목회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여부, 목회자 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수준, 교회의 지원금액, 개인 유산상속 소득여부, 월평균 소득액, 소득액 만족 정도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과 관련하여 각 교단이 시행중인 목회자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송창국(2009)은 목회자의 노후준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단 은급제도와 국민연금, 사적준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수입이 많은 목회자는 노후준비에서도 교단 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및 사적 방식의 대책까지 모두 준비하지만 수입이 적

은 목회자들은 사적준비는 물론 공적준비까지도 하지 못하여 노후준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임태순(2015)은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한 노후생애설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후생애설계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들로 재무, 건강, 관계, 여가활동과 종교 5가지로 제안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노후생애설계를 고찰함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월방(2008)은 은퇴 교역자 복지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서 은퇴 목회자들 대부분이 은퇴 후의 생활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경제적 빈곤, 주택문제, 건강과 여가문제, 교회의 세습 문제 등이 문제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목회자들을 위한 원로원이나 실버 요양원이 부족하여 은퇴목회자들의 욕구충족을 해결해주지 못함과 은퇴목회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은급기금 손실로 이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목회자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노후준비의 대책으로 국민연금과 은급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들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거나 불신으로 인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적 노후준비수단으로 은급제도를 꼽았으며, 은퇴 목회자의 대다수가 생활비를 은급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연간결산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가 14%밖에 되지 않아 목회자의 노후준비수단인 국민연금 가입과 은급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은퇴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목회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성경적 배경 및 방안

#### 3.1 목회자의 소득에 관한 성경적 근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의 한 지파이면서도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였으나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감사의 예물 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장에게 바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는 모두 레위인의 몫이었다(방순배, 2016).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신 18:1-2).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불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신 18:3).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신 18:4-5)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민수기 18장 23-24절에서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서는 오늘날 목회자라 칭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소득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세가지로 언급했다. 첫째, 먹고 사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초대 교회로부터 육체적인 보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이 가족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도 다른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보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목회자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보장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기간 동안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장막을 제작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방순배, 2016).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3-14).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고전 9:1-4).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전에서 먹고 마실 권한이 있음을 통해 고린도전서 9장 1-14절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빌 4:16)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도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고후 11:9),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철저한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목회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복음사역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안

### 3.2.1 교단 차원의 은급제도

은급이란 ‘일제 강점기에 정부 기관에서 일정한 연한을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주던 연금’을 일컫는 용어로, 모든 목회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은퇴 및 명예 은퇴 후와 별세 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마련한 제도이다. 각 교단에서는 ‘재단법인 은급재단’을 두고 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과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그리고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53개의 주요 교단이 있지만 은급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교단은 10여개에 불과하며, 가입방식도 본인 의사에 의해 가입이 가능한 교단이 있는가 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교단도 존재한다.

### 3.2.2 국가 차원의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입법화되었으나 시행이 보류되다가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 초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먼저 적용을 시작으로 2006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2019년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 가입자가 총 13,837,812명으로 약 63%, 지역가입자 총 7,339,795명으로 약 33%, 임의가입자가 총 332,259명으로 약 1%, 임의 계속 가입자가 476,033명으로 약 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국민연금 통계연보, 2019).

그러나 목회자는 성직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다<sup>3)</sup>. 재정이 어려운 상당수의 목회자가 제외된 실정이나 최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이용하(2003)의 연구에서 성직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미가입자가 58.2%이고 가입자 중에서도 17.2%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교단의 은급제도에 가입하였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미가입(납부예외 포함)한

3)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소속 종교단체의 확인서가 필요하다(지역가입자-국민연금공단)

이유도 있다. 성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예외 대상이나 교단차원에서 전 교역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침이 필요하다.

### 3.2.3 교회 및 개인적 차원의 방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1층 보장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구성되며, 2층 보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3층 보장은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목회자가 납부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목회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교회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형태로 가입을 독려하거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를 통해 근로소득 신고를 통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단별 시행되고 있는 은급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여부를 몰라 가입을 못하는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교회가 앞장서서 제도에 대한 홍보와 납입금 지원을 통해 가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 외에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IV.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교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4.1 교단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분석

#### 4.1.1 기독교대한감리회

1914년 6월 제7회 미국 북 감리회 연회에서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고 전덕기 목사 유가족과 당시 미 파송 중이던 권신일 목사에게 매월 15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감리교 은급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은급제도는 1983년 제15회 총회 특별총회에서 교역자 은급규정이 통과됨으로 198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가장 먼저 은급제도를 시행한 교단이다.

현재의 은급제도 상 감리교단 목회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제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대로서 총회 참석을 거부당한다. 1984년 이전에 가입한 목회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가입자는 소속교회로부터 받는 급여의 1개월분을 본부 은급부에 가입금으로 내야 한다. 부담

금은 개 교회 전년도 결산의 1%를 매년 내야 하며 은급급여는 적립금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액수에 근무연한을 곱한 액수를 매달 지급한다. 또한 은퇴은급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51세 이상 교역자에게 기존의 은퇴은급금제도를 적용하고 41세 이상 50세 이하의 교역자에게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월납입액(본인납입금+교회지원금)을 납부한 후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게 되며, 40세 이하에서는 감리연금만 받게 하는 제도이다.

2015년 3월 기준 감리교단의 목회자 수는 10,725명이며, 의무가입이지만 6,100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6%에 달한다. 은급 지급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현직 교역자들과 교인들의 헌금과 부담금, 기여금을 수납 관리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4.1.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목회자가 은퇴한 후 재정이 약한 교회에서 퇴직금 등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해 목회자가 어려움으로 은퇴목회자에 대한 은급제도가 1960년에 실시, 1989년 법인이 설립되었다. 2014년 12월 기준 교단의 목회자 수는 17,468명이며 의무가입형태이지만 76.38%가 가입되어 있다. 은급 납부금은 목사가 개교회로부터 받는 급여의 10%로 교회와 본인이 50%씩 부담하고 있다. 가입자는 최저 20년부터 최고 33년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년 물가상승이 적용되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년 이하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65세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목회자로 사역하고자 하였을 때 연금의 50%를 받게 되는 재직연금과 휴직연금은 2014년에 폐지되었다.

#### 4.1.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은급제도는 1991년에 실시되었으며 2014년 9월 기준 교단의 목회자수는 30,189명이며, 임의가입체도로 1,083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3.6%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은급 지급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연금과 기금으로 세분화하였고, 연금은 납입자가 표준보수월액의 매월 10%를 본인과 교회가 각각 50%씩 납부하며, 기금은 교회가 전년도 1년 예산의 0.2%를 총회가 1년 예산의 1%를, 유지재단이 1년 매출액 1%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10여년 간 자산운용에 대한 불신과 납골당 투자 문제, 손실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회는 밝혔다. 90년대 중반부터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납골당 사업에 뛰어들어 자산관리의 허점을 드러내 안정적 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납골당 사업이후 교단 내 은급재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총회차원에서도 은급가입에 강제성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합동총회 은급문제는 이 가운데 92억 정도가 납골당 사업에 묶여 있어 교단



내에서는 “납골당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아이굿뉴스, 2015.4.12).

### 4.3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개선방안

옛날부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오로지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렇듯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목회사역에만 전념함에 따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회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목회자 가족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사택에서 나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여 목회자도 은퇴 후 경제적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김청수, 2002).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목회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사적보험이나 국민연금,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목회자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목회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은퇴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에 대해 경제적으로 준비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송창국, 2008).

먼저 각 교단별 시행하고 있는 은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일부 교단의 경우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의무가입제도로 전환시켜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가입범위를 확대시켜 일찍부터 은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은퇴 이후 지급받게 될 은급금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의 경우와 같이 납골당 사업으로 인해 교단 내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급기금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단별 은급 기금의 규모의 차이로 투자에 대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각 교단별 은급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기금의 규모가 거대해면서 투자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알려 투명성을 확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수준에서 하나의 통일된 은급규정을 만들어 각 교단에 배포, 시행함으로써 은급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목회자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은급 수급에 대한 교단별 편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를 통한 근로소득 신고로 국민연금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가입률이 저조한 목회자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은퇴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대체로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비용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금융상품 및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목회자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은퇴목회자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사역한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은급제도와 국민연금의 활용방안 등은 목회자 혼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소속교회에서의 국민연금 납부에 따른 분담이 필요하며 은급가입 역시 목회자가 납부하기에는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속교회, 교단차원에서의 분담,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V. 결론

본 연구는 목회자들의 은퇴에 따른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은퇴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고 목회자들의 건전한 노후대책 방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의 은퇴를 위한 노후준비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각 교단별 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등 경제적 소득 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노후 대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목회자가 종교인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목회자들의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급제도 또한 목회자들의 경제적 노후대책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의무가입방식으로 2014년 12월 기준 76.38%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가입자의 참여율이 낮아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된 은급 규정을 만들어 각 교단별 은급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은급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개 교회 목회자들의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속교회 나아가 교단에서 은퇴목회자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목회자 윤리강령에서 목회자의 복음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말라 했으며,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목회자가 시무할 때 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이 교회와 교단에 있으므로 목회자의 은퇴자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은퇴 후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은퇴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 및 사고, 사망, 은퇴자금 마련에 목회자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은급제도와 국민연금 은 목회자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없이 실행가능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음사역의 사명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위해 이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이 교회와 교단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바 교회와 교단이 관련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목회자의 국민연금 및 은급 가입을 독려하여 이들의 노후자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환 (2011). 목회자의 은급제도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측) 목회자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희, 류재광 (2018). 보험 및 은퇴설계. 한국금융연수원.
- 김민우 (2005). 목회자 노후소득보장 만족도 연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옥 (2005). 목회자 노인복지목회에 관한 인식분석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구 (2016). 은퇴목회자의 소득보장방안으로서 연금제도 연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찬목 (2014). 노후 설계에 대한 교회의 역할, 로고스경영연구, 11(4), 23-40.
- 김청수 (2002). 목회의 적, 목사의 적. 서울; 도서출판 누가.
- 문병용 (2010). 소형교회 목회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은퇴후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일 (1998).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 예장 통합 충청, 충북 노회 및 공주 원로원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순배 (2016).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2).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삼성생명 은퇴백서.
- 송창국 (2008).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고찰-교단은급제도와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2, 123-150.
- 이규현 (2008). 목회자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일 (2007).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하 (2003). 성직자 노후 보장 실태와 정책 방향. 연금 포럼 12.
- 임병진 (2009).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성경적 부요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1), 19-34.
- 임태순 (2013).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1(4), 113-128.
- 임태순 (2017).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한 노후생애설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5(2), 81-96.
- 장월방 (2008). 은퇴교역자 복지정책방안 연구 :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연보 (2019). 201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통계청 (2011). 2011 고령자 통계.
- Grosnoe, Robert, and Glen H. Elder, Jr.(2002). Adolescent Twins and Emotional Distress : The Inter-Related Influence of Non-Shared Environment and Social Structure. *Child Development*, 73(6), 1761-1774.
- Richardson, V., & Kilty, K. M.,(1991). Adjustment to retirement : Continuity vs. discontin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3, 151-169.
- Thomas, C.Oden.(1987). 목회신학. 이기춘 역, 한국신학연구소.
- Turner, F. J.(1968).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in social work(London : Macmillan). 56-57.
- Vaillant, G. E., & Mukamal, K.(2001).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